

[별표 2]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공사 장소:
3. 착공일: 년 월 일
4. 완공(예정)일: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다. 노 무 비 : 일금 원정(₩)
6. 대금지급방법
- 가. 선 급 금: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 다. 준 공 금: 완공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7.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계약금액의 ()%
8. 하자보수보증금: 일금 원정(₩), 계약금액의 3/100 이상
9. 하자보수 보증기간: 완공일로부터 ()년
10.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11.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3.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공사업자

상 호 :

상 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공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시공을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이란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율과 금액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발주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부분완공검사, 완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방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착공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는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를 대리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산출내역서) 공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급금)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text{선급금정산액} = \text{선급금액} \times \text{기성부분의 대가} \div \text{계약금액}$$

제10조(재료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업자는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하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승인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에정공정표에 따른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지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 현장으로 한다.

② 공사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사업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공사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며, 공사업자는 공사비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담 비용에 대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응급조치) ① 공사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공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8조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부적합한 공사)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를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공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따른 경우 공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① 공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재료와 대여품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다.

제17조(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에 따른 공사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공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18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20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을 명시한 경우 공사업자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8조에 따른 공사비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른다.

제21조(부분사용) ① 공사업자는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발주자가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자는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으로 공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업자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완공검사증명서의 인수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대금지급) ① 공사업자는 제22조에 따라 발주자가 완공검사증명서를 인수하면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공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④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공사업자는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공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1조에 따라 발주자가 부분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할 수 있다.

제25조(하자보수) ① 공사업자는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② 공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

간 중 공사목적물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공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라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공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

⑥ 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26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공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영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업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사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공사의 중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3.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등) 제27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